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723 ☎ 749-7403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57호 2013. 7. 15.(월)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3-37호(도로명주소 고시) 1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3-537호(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

회							
람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7. 1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 13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 136	신축	2012-05-22	송도과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749-7594 ~ 759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07.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3-537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7월 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1년)를 통해 성공모델 창출 및 개별조례 제정으로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전국적 확산 유도
- 동 행정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행정기능에 대해 주민자치회에서 사전 협의하거나 위탁 처리하여 실질적 생활자치를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목적
- 제8조(권한) : 협의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
- 제9조(위원선정) :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대표위원별 비율, 구청장 위촉 등
-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 설치근거, 위원정수, 위원회 기능 등
- 제17조(정치적 중립) : 주민자치위원 정치적 중립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07. 3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184 FAX 749-715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제정 조례(안) : 붙임 1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법 제29조에 따른 연수2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수2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연수2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연수2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 업무

제 2 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동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동 단위 지역발전 계획, 도시경관 협약, 각종 농·축산 지원 사업 등 동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내 행정구역 변경 계획, 혐오시설 주변 주민간 의견 수렴 등 주민간 이해 조정 업무
2. 위탁업무 : 주민자치센터 운영, 작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 공공시설물 및 마을 휴양지 관리 등
3. 주민자치업무 :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업무로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육아시설 운영 등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 지역대표위원 : 각 동별 통장자율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중 10명 이내
2. 주민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 이내
3. 직능대표위원 :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 이내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지역대표위원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선정한다.
2.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위촉한다.
-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
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
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구
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
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위원 3명
2. 통장연합회 추천인원 3명
3. 지역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 추천인원 3명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
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결
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성·연령·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
회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

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동 주민자치회의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부회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1인은 자치회장이 임명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중 호선한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 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특별법 제29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임 요구를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으며, 해임 요구 발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도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3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연수2동에 한하여 2014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적용례)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고, 구청장은 기존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재위촉한다.